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신대학교 학칙」 제1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본교의 교육과정이 대학의 교육목표 및 인재상과 부합하는 기본역량이 교육과정으로 편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① 교양교육과정의 목표는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전인적 인성과 보편적인 교양 함양”을 목표로 하되, 본교의 교육목표 및 인재상과 발전계획을 고려하여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3.08.01.)

② 전공교육과정의 목표는 “탁월한 학문 및 연구 능력 함양과 실천적인 지성인 양성”을 목표로 하되, 각 학과의 전공교육과정의 목표는 학과별 전공교육과정 운영 내규에서 정한다. (개정 2023.08.01.)

③ 비교과교육과정의 목표는 “영성과 전문성에 대한 역량 극대화”를 목표로 하되, 본교의 교육목표 및 인재상과 발전계획을 고려하여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3.08.01.)

제3조(핵심역량) 「학칙」 제1조의 교육목적에 기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핵심역량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 | |
|---------------|------------|
| 1. 융합지식 역량 | 2. 문화예술 역량 |
| 2. 성경적 세계관 역량 | 4. 경건실천 역량 |
| 5. 의사소통 역량 | 6. 협동능력 역량 |

제4조(역량중심 교육과정 설정) 본교는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다음과 같이 역량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① 핵심역량은 인재상, 산업수요, 사회적 흐름 등 대내·외 여건 분석, 학생 요구분석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교양교육과정 및 비교과과정에 반영한다.

② 전공역량은 인재상, 교계, 지역사회, 국가 산업 등 대내·외 여건 분석, 학문 변화 분석, 학생 요구 분석 등을 고려하여 전공의 특성에 따라 설정한다.

제5조(주관부서) 교육과정의 총괄부서는 교무처로 하며 교양교육 과정 편성 및 운영은 교양학과에서, 전공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각 학과에서, 비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은 센터

및 연구소, 학과에서 실시한다.

제6조(용어의 정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이라 함은 일정한 교육의 목표에 맞추고, 교육 내용과 정해진 수업의 교육 및 학습을 종합적으로 계획한 것을 총괄하여 말한다.
2. “교과목”이라 함은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교과 단위를 말한다.
3. “편성”이라 함은 영역의 구분, 교과목의 신설 및 폐지, 표준이수형태, 이수규정, 이수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총괄하여 말한다.
4. “이수”라 함은 개설된 교과목을 편성된 시간에 참여하고, 공부하여 마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그 결과를 학점으로 부여받는 것을 총괄하여 말한다.
5. “운영”이라 함은 교과목 개설, 수업시간 편성, 담당교수 결정, 분반, 합반, 폐강 등 교과목의 운영에 관한 것을 총괄하여 말한다.
6. “신설”이라 함은 교과목을 신규로 개발하여 처음 나열하는 것을 말한다.
7. “변경”이라 함은 교과목 영역, 국문·영문명칭, 학점구조, 이수학년·학기, 교과목 개요, 교과목 이수규정 등 제반 변경사항을 말한다.
8. “폐지”라 함은 나열된 교과목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9. “동일교과목”이라 함은 교과목명칭 변경 시 변경 전 교과목과 변경 후 교과목의 관계를 말한다. 이 경우 교과목의 명칭은 다르지만 내용은 사실상 같은 것으로 인정하여 변경 후 교과목의 이수는 변경 전 교과목의 재이수가 된다.
10. “대체교과목”이라 함은 교과목이 폐지되어 수강할 수 없을 경우에 다른 교과목으로 대체하여 이수토록 지정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제2장 교육과정 편성

제7조(교육과정의 구분)

-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 비교과교육과정으로 구분한다.
- ② 교양교육과정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양필수와 선택적으로 이수하는 교양 선택 교과목으로 구성하되, 교양필수의 경우 역량별 핵심과정을 선별하여 교양필수로 지정하고, 교양 선택의 경우 학문 영역별로 분류하여 교양 선택으로 지정한다.
- ③ 전공교육과정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전공필수와 선택적으로 이수하는 전공 선택 교과목으로 구성한다.
- ④ 비교과교육과정에 관한 편성 및 운영은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8조(편성단위)

- ① 교양교육과정은 전공에 관계없이 학년별로 편성한다.
- ② 전공교육과정은 전공별로 편성한다.
- ③ 전공 개편 또는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해당 교육과정이 종료된 경우에도 학적 변동자 등을 위하여 종료 직전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편성원칙)

- ① 교육과정은 대학의 교육목표, 인재상 및 역량과 부합되고, 산업체, 교계 및 지역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고, 전공교육과의 연계성, 학문적 변화와 학문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다.
- ② 교과목을 신설할 경우 기존 교과목의 개설, 운영 및 질적 수준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기존 교과목의 통합 또는 폐지 등 관련 조치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교과목편성)

- ① 교과목은 주당 1시간씩 15주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편성한다. 다만, 실험·실습·실기과목의 1학점은 15시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체육 및 기타 교과목 중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학점당 시간을 예외로 따로 정하되 1학점 개설시 15시간 이상은 하여야 한다.(개정2024.02.01)
- ② 교과목당 학점 단위는 1,2,3학점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과목 성격 및 학위과정의 특성에 따라 예외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③ 실험·실습·실기 과목의 학점비율에 대한 상한선은 인문사회계열은 10%이내, 예체능계열은 60~80%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4.02.01.)

제11조(편성학점) 전공별 교육과정별 편성 학점은 최소 이수 학점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선택 교과목은 선택의 폭을 넓혀 줄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제12조(교양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 ① 교양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는 아래의 사항이 반영됨을 원칙으로 한다.
 1. 대학의 교육이념과 교육목표 및 인재 상
 2. 교양교육의 목표
 3. 핵심역량 및 교양교육 로드맵

4. 사회적 요구 및 학문적 변화

5. 학생 및 산업체, 교계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와 만족도

6. 교육성과의 환류

② 교양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역량은 대학의 교육목표, 인재 상,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사회적 요구, 학문적 변화 등 대내외적 여건과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핵심역량의 설정 및 개선 절차는 (별첨 1)에 따른다.

제13조(전공교육과정 편성)

① 전공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는 아래의 사항이 반영됨을 원칙으로 한다.

1. 대학의 교육이념과 교육목표 및 인재 상, 대학발전계획과 특성화 계획

2. 학과 교육 목표 및 학과 전공 능력

3. 사회적 요구 및 학문적 변화

4. 학생 및 지역사회, 산업체, 교계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와 만족도

5. 교육성과의 환류

② 전공필수와 전공 선택 교과목은 균형 있게 구성함을 권장하나 전공별 전공 특성을 반영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③ 각 학과 및 전공은 학과 및 전공의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서 요구하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포함하는 복합적, 종합적 능력을 고려하여 전공능력을 설정하여야 한다. 전공능력의 설정 및 개선절차는 (별첨 2)에 따른다.

④ 교과목은 ‘이론 교과목’, ‘이론과 실험·실습·실기(이하 “실습”이라 한다) 병행 교과목’, ‘실습 교과목’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⑤ 전공 인원이 정원에서 미달한 경우에는 교과목 개설을 축소할 수 있다.

⑥ 전공필수 교과목은 해당 전공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교과목으로 편성하고, 전공 선택 교과목은 다양한 전공교육의 심화를 위한 교과목으로 편성한다. 다만, 국가 자격 등을 위한 전공에서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4조(비교과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① 비교과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는 아래의 사항이 반영됨을 원칙으로 한다.

1. 대학의 교육이념과 교육목표의 구현, 대학 발전계획과 특성화 계획의 실천

2. 학과 교육 목적 및 목표와 인재 상 구현
3. 핵심역량 및 학과 전공능력 제고
4. 사회적 요구 및 학문적 변화 고려
5. 학생 및 지역사회, 산업체, 교계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와 만족도 반영
6. 교육성과의 환류 반영

② 비교과교육과정은 교과교육과정을 보완하고 학생 역량을 강화하고자 운영하는 것으로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의 편성원칙을 기반으로 편성한다.

제15조(복수전공 및 부전공) 복수전공 및 부전공의 전공교육과정 편성은 「학칙」 제30조의 2 및 3 및 복수전공 및 부전공에 관한 규정에 따라 편성한다.

제3장 이수

제16조(이수단위) 교육과정의 이수단위는 개설 교과목의 학점으로 한다.

제17조(교양교육과정 이수)

- ① 학생은 교양학점에서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최소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최소 20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 세부기준은 (별첨 3)에 따른다.
- ③ 2024학년도 입학생부터 교양학점의 이수학점은 졸업이수학점의 20%이상으로 하여야하며 그 세부기준은(별첨3)에 따른다.(개정 2023.05.02.)
- ④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교양학점의 이수학점은 졸업이수학점의 25%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세부기준은 별첨3에 따른다.(개정 2024.02.01.)

제18조(전공교육과정 이수)

- ① 학생은 전공필수 및 전공 선택 교과목을 포함하여 학과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세부기준은 (별첨3)에 따르되 대내외적 여건에 따라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에 의거 학과별로 변경될 수 있다.
- ② 졸업필수 학점 이수는 학칙 및 학칙 시행내규에 따른다.

제19조(복수전공 과정)

- ① 다른 전공의 전공교육과정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 ②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복수전공 대상 전공에서 지정하는 교과목을 전

공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전공과목을 학과별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③ 복수전공 학점이수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첨 3)에 따르되 대내외적 여건에 따라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에 의거 학과별로 변경될 수 있다.

제4장 운영

제20조(교육과정 관리)

- ① 교무처 및 각 학과는 교육과정이 확정되면 개편자료를 연도별로 철하여 보존한다.
- ② 확정된 교육과정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 ③ 교과목 운영계획서를 당해 학년도 시작 전에 작성하고, 교육과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1조(교육과정 운영부서 및 위원회)

- ① 교육과정의 운영부서와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 1. 교양교육과정: 교양학과, 교양교육과정위원회
 - 2. 전공교육과정: 각 학과 및 학과별 전공교육과정위원회
 - 3. 비교과교육과정: 센터, 연구소, 학과,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

제22조(교과목 개설 및 분반 기준)

- ① 교과목의 개설은 교육과정 편성표에 의한다. 다만, 교육과정으로 편성된 교과목이라도 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교양과목은 매 학기 개설을 원칙으로 하되, 수강인원이 60명을 초과할 때 분반하여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 ③ 전공과목은 교과목당 1개 반을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공과목 중 이론과 실습병행 교과목의 수강인원이 60명을 초과할 때 분반하여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 ④ 분반에 대한 인원의 기준은 학과별 상황 및 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렴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제23조(폐강 기준)

- ① 폐강에 대한 기준은 학칙시행내규 제18조에 따른다.
- ② 폐강되는 과목의 시간강의에 대한 강의료는 2주 분의 강의료를 강의한 시간 수에 따라 지급한다.

제24조(수업시간표 및 강의정보제공)

- ① 교무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학기수업 개시 20일 이전까지 수업시간표를 작성·공고하여야 한다.
- ② 강의계획서 공고 시 해당 과목에 대한 강의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3.08.01.)

제5장 교육과정 개편 및 평가

제25조(개편 시기)

- ① 교양교육과정의 개편주기는 4년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회의 변화요구에 대응하고, 사회적 변화에 따른 질 관리를 통한 교육 내실화를 위해 수시 개편할 수 있다.
- ② 전공교육과정의 개편주기는 4년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교계 및 지역사회요구, 교육수요자 요구, 자격증 등과 관련된 법률의 개정 등 개선과 신규 개발이 필요할 때 수시로 개편한다.

제26조(적용 대상) 개편된 교육과정은 다음 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격증과 관련된 법률의 개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학생부터 적용할 수 있다.

제27조(교과목 명칭변경 및 동일교과목 지정)

- ① 교과목 명칭변경, 학점구조 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 개편시행 직전 학년도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 ② 교과목 명칭변경 등 교과목의 차이와 변경이 있더라도 본질상 같은 교과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동일과목으로 인정한다.

제28조(개편원칙 및 절차)

- ① 교육과정은 대내외 환경 및 학문 동향 변화, 교계 및 사회적 요구, 교육 수요자 요구 등에 따라 개편할 수 있다.
- ② 교육과정 개편은 정기 개편과 수시 개편으로 구분하며, 수시 개편의 경우는 일부 교과목의 신설, 폐지 및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 ③ 교육과정 정기 개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육과정 개편 계획 수립(주관부서) : 교육목적, 교육목표, 인재 상, 역량 등과 연계하고 평가 및 환류결과를 반영하여 수립
 - 2. 교육과정 개편 요구분석 및 연구(교양학과 및 전공) : 재학생, 졸업생, 산업계 설문조사 또는 의견 수렴, 학문적 변화, 사회적 요구, 관련 문헌조사, 교육과정 개선 및 개편 방향

연구

3. 교육과정 개편 계획 심의(전공은 전공 교육과정위원회, 교양은 교양교육과정위원회)
4. 교육과정 개편안 심의(교육과정위원회, 교무위원회)
5. 교육과정 개편안 확정(총장) 및 통보(주관부서)

④ 교육과정의 수시 개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개편 계획 수립(주관부서) : 교육목적, 교육목표, 인재 상, 역량 등과 연계하고 평가 및 환류결과를 반영하여 수립
2. 교육과정 개편 계획 심의(교양/전공 교육과정위원회)
3. 교육과정 개편안 심의(교육과정위원회, 교무위원회)
4. 교육과정 개편안 확정(총장) 및 통보(주관부서)

⑤ 교육과정 수시 개편의 개정 신청 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개편 사유
2. 신·구 교과목 대비 표
3. 폐지되는 교과목의 대체 인정 교과목과 경과 규칙
4. 교육과정 개편안
5. 관련 회의록

⑥ 전공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위하여 각 학과 전공별로 교육과정개발에 대한 소위원회를 두고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은 해당 학과 전공에서 주관하며 위원장은 해당 전공 교수를 중심으로 학과장이 선임한다.

제29조(교과목 개발)

- ① 교양교육과정은 본교의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에 부합되도록, 그리고 핵심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개발한다.
- ② 교양교과목의 신규 개설 및 개선은 교양교육과정위원회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 ③ 전공교육과정은 교계 및 사회적 요구 분석, 내외 환경 분석, 학문 동향 분석, 교육 수요자 요구 조사, 졸업생 진로 분석 등의 연구 결과 반영하여 전공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개발한다.
- ④ 전공교과목의 신규 개설 및 개선은 학과 전공교육과정위원회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30조(교과목 폐지)

- ① 교양교과목의 경우 교양학과에서 수요조사, 교육성과평가, 만족도 조사, 교육수요자 의견수렴 등을 고려하여 폐지 교과목을 교양교육과정위원회에 심의하고 선정된 후 교육과정위원회에

상정하여 폐지한다.

- ② 전공교과목의 경우 학과별 전공교육과정위원회에서 폐지 대상 교과목을 심의, 선정한 후 교육과정위원회에 상정하여 폐지한다.

제31조(대체교과목 지정)

- ① 필수교과목이 폐지되는 경우 대체교과목을 지정하여야 한다. 대체교과목은 폐지대상 교과목 개설전공에서 신청하고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확정한다.
- ② 폐지되지 않은 교과목에 대한 대체교과목 지정은 할 수 없다. 다만, 재입학자 또는 졸업예정자에게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대체교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제32조(학적 변동자의 교육과정 적용)

- ① 신 교육과정 적용 전에 입학한 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구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다만, 구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며, 신 교육과정에 개설되지 않은 교과목은 이수하지 않아도 되나 전공별 졸업학점은 구 교육과정의 졸업학점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② 학적 변동자가 이수한 교육과정별 이수 교과목과 학점은 그대로 인정하되, 이수 학점이 부족할 경우에는 신 교육과정의 교육과정에 따라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충족시켜야 한다.
- ③ 구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학생이 신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구 교육과정에서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된 경우 필수 교과목으로 인정한다.

제33조(학적 변동자의 교양과목 적용)

- ① 신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양교육과정의 영역별 이수는 신 교육과정 적용 입학자부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신 교육과정 적용 입학연도 전에 입학한 자로서 구 교육과정의 교양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신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 ③ 구 교육과정에서 교양과목 일부를 이수한 자는 부족한 교양학점을 신 교육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제34조(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

- ①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평가 및 환류는 아래 각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 1. 교과목 담당 교원은 매 학기 수업종료 후 수강생들의 수업평가에 기초하여 강의개선

- 방안을 작성한 수업개선보고서(CQI)를 각 학과에 제출
2. 교육과정 성과분석, 개선실적, 개선 및 환류방안 도출(교양학과, 각 학과별 전공)
 3. 교육과정 개편 및 환류계획 수립(교양학과, 각 학과별 전공)
 4. 교육과정 개편 및 환류계획안 심의(교육과정위원회)
 5. 개선교육과정 적용 및 개선된 성과 공유(교양학과 및 각 학과별 전공)
- ② 교육과정 평가 및 성과는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교양학과 및 각 학과는 차기년도 교육과정에 적용하여 반영한다.
- ③ 각 학과별로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된 성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 및 확산하도록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3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1) 핵심역량 설정 및 점검/개선 절차

1. 핵심역량 설정 위원회 또는 TF팀(기획처에 주관하여 교무위원회에서 선정)

- 대내외 여건 분석

1) 외부여건분석: 국가 및 지역여건, 교계, 학문분야 동향 분석

2) 내부여건분석: 학과 비전 및 특성화계획, 학과운영역량

3) 교육수요자 요구분석: 재학생/졸업생/산업체 수요자 분석

- 핵심역량 도출: 핵심역량 선정 및 정의, 하위역량 선정, 핵심역량과 교과목 연계

2. 교양교육과정위원회

-핵심역량 검토: 위원회 또는 TF팀이 도출한 핵심역량(안) 검토 및 의견제시

3. 교육과정위원회

-핵심역량 검토: 위원회 또는 TF팀이 도출한 핵심역량(안) 검토

4. 교무위원회

-핵심역량(안) 확정

(별첨2) 전공능력 설정 및 점검/개선 절차

1. 각 학과 전공 (또는 학과회의에서 결정된 전공교육과정 연구위원회)

- 대내외 분석

- 1) 외부여건분석: 국가 및 지역여건, 학문분야 동향 분석
- 2) 내부여건분석: 학과 비전 및 특성화계획, 학과운영역량
- 3) 교육수요자 요구분석: 재학생/졸업생/교계/산업체 등 수요자 분석

- 전공능력 도출

- 1) 교육목표 및 인재상 설정
- 2) 전공능력 도출 및 확정

2. 학과 전공교육과정위원회

- 전공능력 검토 및 심의: 연구위원회에서 도출한 전공능력(안) 검토 및 심의

3. 교육과정위원회

- 전공능력심의: 각 학과가 도출한 전공능력(안) 심의

4. 교무위원회

- 전공능력(안) 확정

(별첨3) 학과별 전공학점 및 졸업학점(개정 2024.02.01.)

- 편입생의 복수.부전공 학점은 입학년도 기준으로 이수

<신학과>

구분	학번구분	교양	전공학점			졸업이수학점
			단일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학부생	2024-	24	40	21	36	120
	2019 -2023	18	40	24	36	120
	2017 - 2018	20	40	24	36	120
	2013 - 2016	20	58	-	-	130
	- 2012	20	58	-	-	140
편입생	2024-	-	40	21	36	60
	2017 -2023	-	38			60
	2013 - 2016	-	50			65
	- 2012	-	59			68

<선교학부>

*사회복지전공

구 분	학번구분		교양	전공학점			졸업이수학점
				단일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학부생	2024-		24	40	21	36	120
편입생	동일계열	2024-	-	30	21	36	60
	비동일계열	2024-	-	40	21	36	60

※사회복지사 자격증 코스는 관련 전공 17과목(51학점) 이수

*상담·영어전공

구분	학번구분	교양	전공학점			졸업이수학점
			단일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학부생	2024-	24	40	21	36	120
편입생	2024-	-	40	21	36	60

*미용전공

구분	학번구분	교양	전공학점			졸업이수학점
			단일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학부생	2024-	24	40	21	36	120
편입생	2024-	-	40	21	36	60

<교회실용음악학부>

구분	학번구분	교양	전공학점			졸업이수학점
			단일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학부생	2024-	24	40	21	36	120
	2019 -2023	18	54	불허	40	120
	2018	20	60	불허	40	120
	2017	20	60	불허	42	120
	2013 - 2016	20	71	-	-	130
	- 2012	20	71	-	-	140
편입생	2024-	-	40	21	36	60
	2019 -2023	-	40			60
	2017 - 2018	-	42			60
	2013 - 2016	-	42			65
	- 2012	-	42			68

<사회복지학과>

구 분		학번구분	교양	전공학점			졸학점수
				전공	전공	전공	
학부생		2020 - 2023	18	51	불허	51	120
		2019	18	45	불허	45	120
		2017 - 2018	20	45	불허	45	120
		2013 - 2016	20	65	-	-	130
편입생	동일계열	2017 -2023	-	30			60
		2013 - 2016	-	30			65
	비동일계열	2020 -	-	51			60
		2017 - 2019	-	45			60
		2013 - 2016	-	50			65

<상담영어학부>

구분	학번구분	교양	전공학점			졸업이수학점
			단일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학부생	2019 - 2023	18	36	24	36	120
	2017 - 2018	20	40	24	40	120
	2013 - 2016	20	40	-	-	130
편입생	2019 -2023	-	36			60
	2017 - 2018	-	14			65
	2013 - 2016	-	14			65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학과	교양	전공학점(필수 및 선택)				졸업이수학점
		단일 전공만 선택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선택시			
			주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신학과	30	60	40	21	36	120
선교학부 (상담, 사회복지, 미용전공)	30	60	40	21	36	120
교회실용음악학부	30	60	40	21	36	120

※사회복지사 자격증 코스는 관련 전공 17과목(51학점) 이수해야함